

October 18, 2019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19. 10. 10. ~ 10. 16.)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2019. 10. 14.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IFRS17)의 2022년 시행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 (LAT)를 보완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함

[\[참고자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2]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2019. 10. 14.부터 LTV규제 적용대상이 확대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시행함. 한편 2019. 10.~2019. 12.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주택매매 이상거래 사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임

[\[참고자료\]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금융위3]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시행

2019. 10. 8.부터 핀테크기업의 정의에 대한 해석, 부수업무 영위 등에 대해 규정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함

[\[참고자료\]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위4]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2019. 10. 1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 신설, ②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 정비, ③ 상호저축은행의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 등이 있음

[\[참고자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산자부1] 2019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2019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한 36.1억불을 기록하여 4분기 (2018. 3Q~2019. 2Q) 연속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됨. 주요 특징으로는 ① 첨단 소재·부품 분야에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속적 유입, ② ICT, 바이오 등 새로운 분야의 프로젝트 증가, ③한류연계형 고급소비재·문화상품에 대한 투자관심 계속 등이 있음

[참고자료] 19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산자부2] 국가혁신클러스터 “자율주행차” 사업 본격 추진 - 울산시와 세종시간 MOU 체결

2019. 10. 14. 울산시 및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개발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함. 이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기반삼은 것으로, 울산시, 세종시는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사업 추진 중이고,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예정임

[참고자료] 자율주행차 MOU



[기재부1]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 발표

2019. 10. 14.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산업 신기술·활성화(5건), 기업규제 개선·애로 해소(14건),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불편 해소(9건),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5건) 등 해결방안 마련, ②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한 해결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



[기재부2]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

2019. 10. 8. 개최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술 유망성 및 기업 성장 가능성 중심의 공모방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기업을 연내 지정, ② 지정된 기업에게, R&D 및 사업화 단계에서의 인건비, 자금, 수요기업과의 매칭 등 지원 및 공정혁신 단계에서의 스마트 공장 고도화 설비 도입 등이 있음

[참고자료]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공정위] 사익편취심사지침 제정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

2019. 10. 10.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하고 연구자의 제정안을 공개함.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익제공행위의 주체 및 객체 요건, ② 행위유형별 판단 기준 및 심사면제 기준, ③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서의 예외요건(효율성, 보완성, 긴급성) 세부기준, ④ 각 행위유형 및 예외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 등이 있음. 향후 공정위안을 마련하여 행정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참고자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연구용역 결과 발표



[참고자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안



[문체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문체부의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 부여 예정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1인)]

현행 법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정 웹사이트에서 별도로 저장·관리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별도로 저장·관리된 개인정보의 보안 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저장·관리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29조 및 제76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매시장 및 소비자 트렌드가 오프라인유통에서 온라인유통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고, 이미 보편화된 쇼핑채널로 자리 잡은 온라인쇼핑에 대해서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그 반사이익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규제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을 제외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2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은 비상장 벤처기업과 유사한 성장단계에 있음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차등 적용 받아 코넥스 상장 혜택이 희석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46조의7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과세특례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해당 시설들의 규모·면적 등을 고려하면 3년이라는 분할납부 기간은 시설 이전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여전히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한정되어 있음.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신규인력 채용 등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1인)]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점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 경감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다만, 개별소비세 경감 대상 지역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경제 활력 제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해외 골프 수요와 대체 관계가 크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21조의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0인)]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취재·방송 제작, 디자인, 금융투자 분석 및 투자자산운용 업무 등 제한된 일부 전문 업무에 대해 재량근로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다른 근로자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직이거나 책임자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면제제도가 없는 상태임. 이에 우리나라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3 이내에 드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에 예외로 두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3조제4호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1인)]

현행법에는 기술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미흡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물리적·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우수한 정보보호인력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개인정보 보호수준 하락이 예상됨. 유럽의 GDPR와 주요 국가에서는 중대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규정하여 구분하고 있음. 이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형사처벌의 벌칙은 삭제하고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호 삭제, 제73조의2 신설)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대관 및 PR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법적 자문 및 이에 수반된 다양한 정책적 자문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을 종합적·전략적·실용적으로 처리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판교

베이징

상해

호치민

하노이